

	NCS기반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지침	규정번호	3-3-26	
		제정일자	2016.02.19	
		개정일자	2017.09.01	
		개정번호	Ver.2	총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NCS기반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·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학과NCS평가위원회) ①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과는 학과NCS평가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7.9.1.>

② 학과NCS평가위원회는 학과장 및 NCS 전담교수를 포함하여 학과의 전임교원의 과반과 2인 이상의 산업체 현장 전문가 또는 NCS 교육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③ 학과NCS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7.9.1.>

1.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, 운영,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 수행
2. 학과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
3. NCS기반 교육과정 학과NCS평가보고서 작성 <개정 2017.9.1.>

④ 학과NCS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9.1.>

제3조 (대학NCS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NCS평가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7.9.1.>

② 대학NCS평가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처장,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부처장, 기획부처장,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대학NCS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7.9.1.>

1.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 NCS평가결과에 대한 심의
2.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NCS평가 수행
3. 대학 NCS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
4. NCS기반 교육과정 대학NCS평가보고서 작성

⑤ 대학NCS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⑥ 대학NCS평가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제4조(학과NCS평가보고서) ① 학과의 장은 매 학년도 2학기의 성적처리종료 후 30일 이내에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NCS평가보고서를 대학NCS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② ①항의 학과NCS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1.>

1.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,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,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
2.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,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개선방안
3. 취업률, 신입생 충원율, 재학생 충원율,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평가 및 그 개선방안
4.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의 실시 및 교육과정개선 반영 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
5. 기타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

제5조(대학 NCS평가) ① 대학NCS평가위원회의 장은 매 학년도 2학기의 성적처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학의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1.>

② 대학 NCS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1.>

1. 각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,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,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
2.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,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
3. 취업률, 신입생 충원율, 재학생 충원율,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
4.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에 대한 학과의 평가와 그 결과의 교육과정개선 반영 여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 도출
5. 기타 대학의 NCS 기반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

③ 대학NCS평가위원회는 대학 NCS평가의 결과를 담은 대학NCS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한다. <개정 2017.9.1.>

제6조(교육품질 개선계획) 학과 및 부서의 장은 교육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대학NCS평가 보고서 및 학과NCS평가보고서에 적시된 개선계획 전부 또는 선별한 일부를 차년도 교육과정 개편 및 연간 사업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환류를 시행해야 한다. <개정 2017.9.1.>

제7조(운영세칙)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NCS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. <신설 2017.9.1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.